

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

(대표발의 윤태천의원)

의안 번호	247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3. 11. 19.
제출자 : 윤태천

제정이유

- 안산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여 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것임

주요내용

- 예산절감 사례·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 등의 공개대상을 규정함(안 제2조)
- 공개대상 사례집을 발간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(안 제3조)
-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한 심사와 이를 위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4조)
- 공무원의 예산절감과 주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절감 등의 제안에 대하여 성과금 지급 근거를 규정함(안 제5조)

제정조례안 : 붙임

- 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-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- 예산수반사항 : 불임2의 비용추계 예산안 참고
- 기타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,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 개선등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
 2.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·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
 3.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
 4. 그 밖에 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3조(공개방법)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
-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

제4조(예산낭비 등 심사)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.

- ② 예산낭비 등에 관한 심사는 「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.

- 제5조(포상 등)** ① 주민의 제안으로 안산시(이하 “시”라고 한다)의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- 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.
- ④ 성과급,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」 및 「안산시 포상조례」에 따른다.

제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476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3. 12. 9.
제 안 자 : 기획행정위원장

□ 수정이유

- 안산시의 예산을 절감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절감의 동기를 부여함과 동시에 예산 낭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사례집 발간을 강행규정으로 수정하고자 함

□ 주요골자

- 사례집 발간을 강행규정으로 수정(안 제3조)

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**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
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제3조제2항중 “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” 를 “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”로
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정안
제3조(공개방법) ① (생략) 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<u>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.</u>	제3조(공개방법) ① (원안과 같음) ② ----- <u>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</u>